

# 2018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

## ① 노인·장애인 분야

1.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지지원등급 신설(개선)
2.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(공익활동)확대(개선)
3. 기초연금 인상 지원(개선)
4. 경로당 냉·난방비 보조금 지급방식 변경(개선)

## 1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지지원등급 신설(개선)

### □ 2017년까지

- 노인성 질병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만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신체·가사 활동 등 서비스 제공
- 장기요양등급 : 1~5등급

### □ 2018년부터

- 경증치매가 있는 어르신이 신체적 기능과 관계없이 장기요양보험 이용 가능
  - 시행시기 : 2018. 1. 1.부터
  - 대상자 : 장기요양보험 미신청 및 등급외자 중 치매어르신
    - ※ 2년간 치매진료 + 약물치료 받은 자
  - 서비스 내용 : 치매증상 악화 지연을 위한 주·야간보호 인지기능 개선 프로그램 등
  - 장기요양등급 : 1~5등급 + 인지지원등급

• 주민복지실 ☎ 061) 430-3152

## 2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(공익활동) 확대(개선)

### □ 2017년까지

- 사업대상 : 만 65세이상 기초연금 수급대상자
- 지급기준 : 월 220천 원(활동비)

• 주민복지실 ☎ 061) 430-3158

### □ 2018년부터

- 사업대상 : 만 65세이상 기초연금 수급대상자
- 지급기준 : 월 270천 원(활동비)

• 주민복지실 ☎ 061) 430-3158

### 3 기초연금 인상 지원(개선)

- 2017년까지
  - 지급대상 : 65세 이상 일정기준액(소득인정액) 이하인 저소득 어르신
  - 지원 선정기준액
    - 단독가구 : '17년 119만원
    - 부부가구 : '17년 190.4만원
  - 최고지급액 : 206천 원

- 2018년부터
  - 시행시기 : '18. 9월~
  - 지원 선정기준액
    - 단독가구 : '18년 131만원
    - 부부가구 : '18년 209.6만원
  - 최고지급액 : 250천 원
  - 지원내용
    - '18. 1. ~ 8. : 단독가구 월 20~206천 원  
부부가구 월 40~330천 원
    - '18. 9. ~ 12. : 단독가구 월 20~250천 원  
부부가구 월 40~400천 원

• 주민복지실 ☎ 061) 430-3158

### 4 경로당 냉·난방비 보조금 지급 방식 변경(개선)

- 2017년까지
  - 경로당 냉·난방비 지원액
    - 난방비 150만원 / 개소당
    - 냉방비 10만원 / 개소당
  - 경로당 냉·난방비 지급방식
    - 사전 지급방식(증빙자료 사후 첨부 정산)

- 2018년부터
  - 경로당 냉·난방비 지원액
    - 난방비 160만원 / 개소당
    - 냉방비 20만원 / 개소당
  - 경로당 냉·난방비 지급방식
    - 사후 지급방식(증빙자료 사전 첨부 제출)

• 주민복지실 ☎ 061) 430-3153